

이슈&ETF

MSCI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 편입 유보

- MSCI '연례 시장 분류 리뷰'에서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Watch List) 편입 유보(6/24)
- 접근성 리뷰 단계(6/19)에서 편입 유보 전망이 시장에 반영, 이번 발표의 영향은 제한적
- MSCI는 '이슈의 실질적 해소' 판단 근거로 고려,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정부 로드맵('26.1) 완료 시점에 다시 관찰대상국(Watch List) 편입 가능성 논의 가능할 것

MSCI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 진입 불발 원인과 과제

한국은 6/24(한국시간) 발표된 MSCI '연례 시장 분류 리뷰(Annual Market Classification Review)'에서 선진국(DM) 지수 관찰대상국(Watch List) 편입이 유보되었다.

지난 6/19 발표된 MSCI '글로벌 시장 접근성 리뷰(Global Market Accessibility Review)'에서는 투자상품 가용성 항목이 '개선 필요(-)'에서 '보통(+)'으로 상향되었다(표 1). 다만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흐름 등 핵심 항목은 '개선 필요(-)' 등급이 유지되며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 편입이 유보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접근성 리뷰에서 편입 유보 가능성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던 만큼, 이번 발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MSCI가 '제도의 실질적 시행과 문제 해결, 시장 참여자의 변화 체감 정도'를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는만큼, 정부가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26.1)」의 완료 시점에 재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로드맵상 완료 목표 시점은 2027년 초로 예정되어 있다.

표 1. 한국 시장에 대한 2026년 MSCI 시장접근성 점검 결과(6/19)

리뷰 항목	세부 항목	'24년 6월	'25년 6월	'26년 6월	변경 여부
외국인 지분소유에 대한 개방성	투자자 자격 요건	++	++	++	
	외국인 보유지분 제한 수준	++	++	++	
	외국인 투자가능 잔여 수준	+	+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권리	+	+	+	
자본유출입 편의성	자본유출입 통제 수준	++	++	++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	-	-	
시장운영 체계의 효율성	투자자 등록 및 계좌 설정	-	-	-	
	시장 규제	++	++	++	
	정보 흐름	-	-	-	
	청산 및 결제	-	-	-	
	수탁	++	++	++	
	기재 및 예탁	++	++	++	
	거래	++	++	++	
	양도성	-	-	-	
	증권 대차	++	++	++	
	공매도	-	+	+	
	투자상품 가용성	투자상품 가용성	-	-	+
제도 체계의 안정성	제도 체계의 안정성	+	+	+	

주: 3단계 분류 체계. (++) 문제 없음, (+) 큰 문제 없으나 개선 여지, (-) 개선 필요

자료: MSCI, 국제금융센터,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참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절차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매년 6월 발표되는 ‘연례 시장 분류 리뷰’를 통해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지정된 후 관찰 기간을 거쳐야 한다. 관찰대상국 등재 후에는 관찰 기간 경과 후 최종 편입 여부가 결정된다. ‘연례 시장 분류 리뷰’ 발표 전 약 일주일 정도 전에 ‘글로벌 시장 접근성 리뷰’가 발표되어 대략적인 결과를 가능할 수 있다. 관찰 기간은 최소 12개월로 사안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26.1.9)」

표 2. MSCI 로드맵 주요 과제 캘린더

과제명	세부 과제	부처·기관	시기
1. 외환시장 선진화	①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 국내 중개시스템(SMB, KMB) 24시간 운영 전환	재정경제부·한국은행	
	• 전자거래(e-FX)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매매기준율(MAR) 산정방식 및 시장 유지 필요성 검토·개선	재정경제부·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6.7월
	•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WMR) 편입 추진	재정경제부·한국은행	지속
	②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 역외 원화결제기관 제도 도입 ※ 필요조치사항 : 라이선스 부여 기준, 관련 거래의 신고·확인 의무 면제 등 외환법령상 근거 마련	재정경제부·한국은행	'26.9월 시범운영
	•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결제망'을 신규 구축하고, SWIFT와 연계가 원활하도록 ISO 20022 도입	재정경제부·한국은행	'27년 정식시행
	③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외환규제·제도 정비		
	•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유형별 신고 완화·폐지 검토	재정경제부	'26.上
	• 비거주자의 원화연계 외화증권 관련 규제 개선	재정경제부	'26.1Q
	• 규제샌드박스 사업 신고·업무체계 정비, 중복 신고 일원화	재정경제부	'26년
	• 국내-글로벌 외환중개사 업무연계 허용범위 구체화	재정경제부	'26.1월
	④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RFI 제도 개선 ※ 필요조치사항 :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 CBM 가이드라인 개정 등		
	• RFI 등록 간소화 방안 마련	재정경제부·한국은행	'26.上
• 신규 RFI 3개월 보고유예, 보고 준비 초기 착수 지원	재정경제부·한국은행	즉시	
• 제재 기준 및 방법 세분화, 보고 기한 및 조치 절차 정비	재정경제부	'26.上	
2. 글로벌 표준 증권거래·결제 체계 마련	① 실질적인 옴니버스 계좌 기반 결제구조 도입		
	• [명목계좌] 글로벌 수탁은행(GC)의 결제계좌 개설·관리 허용 ※ 필요조치사항 : 실명해석은 로드맵 발표로 같음, 특급법은 별도 유권해석 배포	금융위원회	즉시
	• [명목계좌] 펀드별 개별결제를 위한 예탁원 전문 시스템 개편	예탁결제원	'26.4월
	• [외국인통합계좌] 계좌 개설주체 제한 요건 폐지 ※ 필요조치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26.1월
	• [외국인통합계좌] 최종투자자별 거래내역 보고 주기 완화(월→분기) ※ 필요조치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6.1Q
	② 거래·결제 인프라의 글로벌 연계 강화		
	• CTM-예탁원 시스템 연동 또는 K-CTM 개발 추진	예탁결제원	'27년
	• CLS 기반 증권결제 지원을 위해, [1단계]연장시간대 자금조달·결제 여건 조성(시장참여자 협의) [2단계]필요시 외국환거래규정에 시장조성 관련 의무 명확화	재정경제부·한국은행	'26.1Q
	• 일시적 원화차입 활용 실태조사 바탕, 가이드라인 마련	재정경제부·한국은행	'26.上

(계속)

(계속)

과제명	세부 과제	부처·기관	시기
3. 투자자 등록 및 계좌개설 편의성 제고	① LEI 기반 계좌 식별체계 정착 지원		
	• 전환계획 홍보 및 전환신청 사전 수요조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금투업권	'26.1Q
	• IRC→LEI 식별체계 전환을 위한 은행·금투업권 전산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금투업권	'26.上
	• LEI 등을 통해 기존 계좌의 식별번호를 전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금투업권	'26.下
	② 외국법인의 실명확인 절차·수단 개선		
	• 일정 요건 하 위임장 공증요건 완화 ※ 필요조치사항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	금융위원회·은행연	'26.2월
	• 일정요건 하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및 공증요건 완화 등 ※ 필요조치사항 : 비대면 금융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은행연	'26.2월
	• 일정 요건 하 해외투자자의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는 대면 확인 허용 및 공증요건 완화 ※ 필요조치사항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	금융위원회·은행연	'26.2월
	• LEI 발급확인서 도입 및 실명확인증표로 인정 ※ 필요조치사항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 예약원 지침·약관 개정 및 시스템 구축	금융위원회·은행연·예탁결제원	'26.1Q
	4. 공매도 규제 합리화	• NSDS 참여자의 중복 감리자료 제출 및 보고의무 면제 ※ 필요조치사항 : 거래소 업무규정·시장감시규정 및 세칙 개정	금융위원회·거래소
5. 영문 정보공시 개선	• (의무화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 기업 및 공시항목 확대, 제출기한 단축 ※ 필요조치사항 :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금융위원회·거래소	'26.3월 (주주총회 결과) '26.5월
	• (의무화 3단계) 공시항목 확대 및 제출기한 단축을 코스피 쏘 상장사로 확대 추진하고, 코스닥 대형사의 의무 도입 검토	금융위원회·거래소	'27.3월
	• 거래소 AI 번역시스템 고도화, 번역 지원 대상기업 확대, 영문공시 용어집 발간·배포 등	거래소	'26.4월
	• 영문 DART 전용 인프라 구축	금융감독원	'26.1월
	• 재무보고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적용 대상·범위 확대	금융감독원	~'28.1Q
	• 영문공시 우수법인 수상기업 수 확대(3→5사) • '26년 공시실적을 바탕으로 '27년부터 수상	거래소	'26.1월
	6. 현물이체, 장외거래 제약 요인 해소	• 장외거래 세부 가이드라인 발간(영문본 포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조건부 주식양도 계약(RSU)의 장외거래 사후보고 허용 ※ 필요조치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6.1Q
7. 배당금을 알고 투자하는 선진 배당절차 확산	• 배당절차 개선여부·계획을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에 포함, 개선시 기업가치제고 우수기업 선정가점 부여 ※ 필요조치사항 :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 기업가치제고계획 우수기업 선정기준 개정	금융위원회·거래소	'26.1Q
	• 공시우수법인 평가가점 부여('26년 공시실적 바탕 → '27년부터 수상) ※ 필요조치사항 : 거래소 공시우수법인 평가기준 개정	거래소	'26.1Q
8. 한국물 파생상품 접근성 제고	• FTSE Korea 지수선물 ICE Futures US 상장	거래소	'26.2월
	• Eurex, ICE 거래소부터 거래시간 전면 확대	거래소	'26.1Q

자료: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합동,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